#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4

제출일자: 2019. 9. 17.

제 출 자: 광진구청장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주민 공개에 관한 조문 명확화(안 제5조)
- 나.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산일 규정 삭제(안 제16조)
- 다.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수의계약대상(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25조)
- 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두 번 이상 갱신시 수탁자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 평가 신설(안 제21조제7항 신설)
- 마. 감정평가 관련 법률 명칭 개정(안 제27조제4항 신설)
- 바.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개정(안 제28조)

- 사. 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허가시 대부료의 50/100 감면대상 추가 신설(안 제29조)
- 아. 수의계약으로 매각 범위 추가 신설(안 제3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9. 8. 13. ~ 9. 2.) 결과 : 접수된 의견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별도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 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 물의 연면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료의 50/100을 감면한다.
  - 1. 광진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제39조**제1호 및 제4호 중 "2003년 12월31일"을 2012년 12월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구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10. 구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구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구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①· <b>十</b>	: 내미#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
는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정한다.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
	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
제16조(무상사용 기간)	<u>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삭 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	
  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	
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	제18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
가할 수 있는 경우)	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u>따른</u> 수	②
의계약으로 <u>사용·수익허가할 수</u>	<u>사용·수익허가 할 수</u>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u>와 같다.</u>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구유
	재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
	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del></del>

현 행	개 정 안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자가 구유재산을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이 사용하는 경우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⑥ (생 략) <u>&lt;신 설&gt;</u>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 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
제25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 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력을 평가한다. 제25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같은 조

현 행	개 정 안
	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삭 제>
조례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중	
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자가 구	
유재산을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하	
는 경우	
2.「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	<삭 제>
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	
는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	
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이 사용하는 경우	
제27조(토석채취료 등)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	4
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	
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	
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의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28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제28조(건물대부료의 산 <del>출</del> 기준)

#### 현 행

## 개 정 안

- ① (생략)
-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작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합계)
-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				
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				
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	<u>&lt;삭 제&gt;</u>			
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				
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				
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				
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				
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				

현 행		개	정	안
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				
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				
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				
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				
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				
당 층의 총면적)}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의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비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삭 제>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삭 제>			

현 행	개 정 안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	
라 산출한다. 제29조(대부료 감면)	제29조(대부료 감면)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료의 50/100
	을 감면한다.
	1. 광진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
	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
	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
	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하나와 같다.
1.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구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300제곱미터 이하의	

현 행	개 정 안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	4
미터 이하로서, 2003년12월31일 이	2012년12월31일 이
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	전부터
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 지(건물바닥면	
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	
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	
의 면적범위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	
만,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	
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	
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	
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	
할 수 있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
	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
	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9.「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구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0. 구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구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구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재무과 왕정수(02-450-7343)